

부속시설등(제13조제1항 관련)

시설	구분	
연구시설	연구용 실험실, 대학원 연구실,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, 전통문화 연구소,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, 국가유산정책연구실, 전통건축도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	
부속시설	공통	박물관, 교수·직원·대학원생·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, 공관,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, 연구실안전관리센터,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,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
	인문·사회계열	유적 발굴 실습실, 전통교양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
	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	학술림, 전통조경 실습실, 고건축물(古建築物) 복원 실습장, 공학교육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, 건축문화유산 정보분석교육센터
	예능계열	전통미술공예 실습실, 전통문화상품 개발실 및 그 부대시설, 전통기능교육센터
교육기본시설	강의실, 실험실습실, 교수연구실, 행정실, 도서관, 학생회관, 체육관,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	
지원시설	강당, 정보전산원, 실습공장, 학생기숙사 등 학생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, 보건진료소, 공동실험실습관 및 그 부대시설	
비고: 대학원,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.		